

(앞쪽)

제 호
토지 출입증
사 진 3cm×4cm
성 명
기 후 에 너 지 환 경 부 특 별 시 · 광 역 시 · 특 별 자 치 시 · 도 · 특 별 자 치 도 한 국 수 자 원 공 사

60mm×90mm[보존용지(1종) 120g/m²]

(색상: 연하늘색)

(뒤쪽)

토지 출입증	
소속/직급: 성 명: 생년월일: 출입목적: 출입지역: 유효기간: . . . 부터 . . . 까지 위 사람은 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9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 등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. 년 월 일	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·광역시장 ·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·군수 한국수자원공사장	직인
1. 출입 등을 하려는 사람은 출입 등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합니다. 2.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. 3. 「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증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. 4.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.	